

영유아 조기 지원



14.C 가족 비용 참여 가이드라인

14.C.1. 소개

- (a) 장애인 교육법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 Part C는 의회에서 장애를 가진 영유아의 기관간 종합 조정 서비스 체계로 지정되었습니다. 의회는 장애인을 위한 기존 프로그램이 존재함을 인정하며 Part C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조율하는 인프라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Part C의 자금 지원은 공공 및 민간 보험을 포함한 연방, 주, 지방 자금을 활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공공 기금은 모든 조기 개입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조기 개입 서비스가 공공 지출로 제공될 수는 없습니다. 가정은 자녀의 프로그램에 금전적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대는 민간 건강 관리/보험과 Apple Health for Kids/Medicaid가 ESIT 가족 비용 참여(Family Cost Participation) 조건이 적용되는 Part C 조기 개입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하여 충족할 수 있습니다.
- (b) 각 주는 이러한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여 최대한 많은 장애 영유아와 그 가족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각 주는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여 아동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충분한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ESIT가 넓은 자격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 및 민간 보험과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4.C.2. 일반 가이드라인

- (a) 34 CFR §303.521(e)(2)(i)에 따라 ESIT 제공자는 다음을 요청할 때 지급 체계 및 수수료 정책 (System of Payments and Fees Policy) 사본을 부모에게 제공합니다.
 - (1) 개별화 가족 복지 계획 (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 IFSP) 회의에서 조기 개입 서비스가 결정되었음을 인정하는 동의,
 - (2) 공공 또는 민간 보험을 이용하여 Part C 서비스 대금을 납부할 것에 동의.
- (b) 공공 또는 민간 보험 청구는 부모가 ESIT 지급 체계 및 수수료 정책(System of Payments and Fees Policy)을 제공받고 동의한 후에 처리됩니다.
- (c) 다음 기능과 서비스는 반드시 ESIT 제공자에 의해 공공 비용으로 제공해야 하며 가정에는 어떠한 비용도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 (1) Child Find(아동 찾기) 34 CFR §§303.301에서 303.303까지 아동 찾기 조건 적용.

- (2) 34 CFR §303.320에 따른 평가 및 사정, 34 CFR §303.13(b)의 평가 및 사정에 관련된 기능.
- (3) 34 CFR §§303.13(b)(11) 및 303.33에 정의된 서비스 조정 서비스(가족 자원 조정).
- (4) 다음에 관련된 행정 및 조정 활동
 - (i) 34 CFR §§303.342에서 303.345에 따른 IFSP 및 중간 IFSP 개발, 검토, 평가,
 - (ii) 34 CFR §§303.400에서 303.511까지의 절차적 안전조치 및 34 CFR §§303.300에서 303.346까지의 기타 주 전역 조기 개입 서비스 구성요소 적용
- (d) 공공 건강관리/보험 및/또는 민간 건강관리/보험 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가정에 소득과 지출 정보 제출과 개인식별정보 공개 동의, 공공 및/또는 민간 보험 접근 동의를 요청합니다. 소득 및 지출 정보는 다음에 이용됩니다 가정의 지급 능력 또는 불능 상태 결정. 가정의 지급 능력 또는 불능 상태 결정은 일년에 한 번 이상 또는 가정의 요청에 따라 그보다 조기에 검토해야 합니다.
- (e) 34 CFR §303.521(a)(4)(iii)에 따라 가정이 "지급 불능" 정의를 충족할 경우, 자녀의 IFSP에서 확인된 모든 Part C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또한 가정의 지급 불능으로 인해 Part C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거부되지 않습니다.
- (f) 34 CFR §303.520(a)(2)(i) 및 (iii)에 따라 조기 개입 제공자는 Part C 서비스를 받는 조건으로 부모에게 공공 혜택이나 보험 프로그램에 가입하거나 참여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자녀나 부모가 그러한 프로그램에 아직 참여하지 않았다면 자녀나 부모가 공공 혜택 또는 보험을 이용하기 전에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부모가 Apple Health for Kids/Medicaid 참여나 접근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조기 개입 제공자는 부모가 동의한 IFSP의 Part C 조기 개입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Apple Health for Kids/Medicaid 이용 동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이나 가정에 본 조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지연하거나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 (g) 34 CFR §§303.520(a)(3)(iv) 및 (b)(1)(ii)에 따라 조기 개입 제공자는 다음과 같이 민간 건강관리/보험 이용 시 가정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의 일반적인 범주를 안내하는 설명서를 제공합니다.
 - (1) 자기 부담금, 공동보험, 보험료, 공제금, 아동, 부모, 아동의 가족에 적용되는 보험 정책의 연간 또는 평생 건강관리/보험 상한으로 인한 혜택 손실 등으로 발생하는 기타 장기 비용
 - (2) 가족의 민간 건강관리/보험 이용이 장애 아동이나 부모, 아동 가족의 건강보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 보험을 이용한 Part C 조기 개입 서비스 대금 지불로 인해 건강관리/보험이 중단될 가능성
 - (3) 조기 개입 서비스 대금을 민간 보험으로 지불할 경우 건강관리/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 (h) 34 CFR §303.520(a)(2)(ii)에 따라 Apple Health for Kids/Medicaid 및/또는 민간 건강관리/보험이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 조기 개입 제공자는 가족 동의를 받습니다.
 - (1)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자녀나 부모가 이용 가능한 평생 보장 또는 기타

- 보험 혜택의 축소,
- (2) 공공 혜택이나 보험 프로그램에서 지불하는 서비스 대금을 아동의 부모가 지불하게 됨,
- (3) 아동이나 부모에 대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공공 혜택 또는 보험이 중단됨,
- (4) 총 건강 관련 지출로 인해 아동이나 부모의 가정 및 지역사회 면제 자격의 상실 위험이 발생함.
- (i) 34 CFR §303.521(e)에 따라 ESIT 제공자는 부모에게 Apple Health for Kids/Medicaid 또는 민간 건강관리/보험 이용, 수수료 부과, 부모의 지급 불능 결정에 관련된 절차적 안전조치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j) 부모는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습니다.
 - (1) 34 CFR §303.431에 따라 중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
 - (2) 34 CFR §§303.436 또는 303.441 중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정식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 (3) 34 CFR §303.434에 따라 주에 항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
 - (4) 금전적 청구 결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에서 정한 다른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
- (k) 가족은 지급 체계 및 수수료 정책(System of Payments and Fees Policy)을 받을 때 조기 개입 서비스에 대한 동의 시 이러한 권리를 안내받습니다.

14.C.3. Apple Health For Kids/Medicaid 또는 민간 건강관리/보험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 (a) 자녀가 Apple Health for Kids/Medicaid에 참여하는 가정은 자녀의 Part C 조기 개입 서비스에 가족 비용 참여(Family Cost Participation)가 적용됨을 안내받습니다. 가족에게는 청구를 위해 아동의 식별 정보 공개에 서면 동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서명된 사전 통지서, 공공 및/또는 민간 보험 접근 동의, 소득 지출 확인서를 반드시 가족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 (b) 민간 건강관리/보험을 가진 가정에게는 최초 IFSP에서 가족 비용 참여에 따라 Part C 조기 개입 서비스 청구에 대한 서면 동의를 요청할 것입니다.
- (c) 사전 통지서에 포함된 공공 및/또는 민간 보험 접근 동의와 소득 및 지출 확인서에는 반드시 가족의 민간 건강관리/보험 접근 허용에 따라 발생하는 일반 비용 범주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d) 서명된 사전 통지서, 공공 및/또는 민간 보험 접근 동의, 소득 지출 확인서를 반드시 가족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 (e) 또한 IFSP 서비스가 증가되는 경우에도 (빈도, 강도, 기간, 지속시간) 항상 서면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 (f) 가정은 조기 개입 서비스를 위해 공공 또는 민간 보험 청구에 동의할 때마다 지급 체계 및 수수료 정책을 받습니다.
- (g) 34 CFR §303.521(a)(4)(iv)에 따라 공공 보험이나 혜택을 받는 가정은 공공 보험 또는 혜택, 민간 보험이 없는 가정과 비교하여 균형이 맞지 않는 요금을 부과받지

않습니다.

- (h) 34 CFR §303.520(b)(1)에 따라 가정이 Apple Health for Kids/Medicaid와 민간 보험을 모두 갖고 있는 경우 조기 개입 제공자는 다음에 대한 부모 동의를 받습니다.
 - (1) 가족 민간 건강관리/보험을 이용하여 IFSP에서 받는 최초 조기 개입 서비스 비용을 지불함
 - (2) 아동의 IFSP에서 서비스 빈도, 기간, 지속시간, 강도 증가 시 민간 건강관리/보험을 이용하여 비용을 지불함.
- (i) ESIT 제공자는 가족 비용 참여에 따라 Part C 조기 개입 서비스에 청구된 자기부담금, 공동보험, 공제금을 포함한 Apple Health for Kids/Medicaid와 민간 건강관리/보험을 담당합니다.
- (j) 가족 비용 참여에 따라 Part C 조기 개입 서비스 비용을 민간 건강관리/보험에 청구하였으나 거절된 경우, 승인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족의 요청에 따라 이의제기가 시작되면 FRC 또는 기타 적합한 직원이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지급 불능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족은 아동의 개별화 가족 복지 계획 (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 IFSP)에 포함된 가족 비용 참여에 따라 Part C 조기 개입 서비스의 건강관리/보험료, 자기부담금, 공동보험, 공제금을 부담합니다.
- (k) Part C 자격이 있는 영유아의 부모나 가족이 Apple Health for Kids/Medicaid 또는 민간 건강관리/보험의 접근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아동이나 가정의 가족 비용 참여에 따른 Part C 조기 개입 서비스를 지연하거나 거절해서는 안됩니다. 단,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월간 수수료 표가 적용됩니다(지급 체계 및 수수료 정책(System of Payments and Fees Policy) 28.B.9 수수료 참조).
- (l) Washington Office of the Insurance Commission은 부모의 건강 관리/보험에 대한 질문을 도와드립니다. 무료 핫라인 전화번호: 1-800- 562-6900.

14.C.4. 가족 비용 참여 일반 가이드라인

- (a) ESIT 최초 자격을 확인한 후, 모든 가정에 소득 및 지출 정보 제출과 개인식별정보 공개 동의, 공공 및/또는 민간 보험 접근 동의를 요청합니다. 다음의 상황을 처리하고 문서화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지출 정보가 필요합니다.
 - (1) 가족이 가족 비용 참여가 적용되는 서비스에 대해 Apple Health for Kids/Medicaid 접근을 거절한 경우,
 - (2) 가족이 Apple Health for Kids/Medicaid 신청을 거절한 경우,
 - (3) 가족이 가족 비용 참여가 적용되는 서비스에 대해 민간 건강관리/보험의 접근을 거절한 경우,
 - (4) 민간 보험 자기부담금, 공동보험, 공제금의 지불 능력 또는 불능 상태 결정,
 - (5) 가정에 공공 또는 민간 보험이 없으며 수수료가 평가될 경우.
- (b) 소득과 지출 정보로 확인한 조정 연간 소득이 연방빈곤선 (Federal Poverty Level, FPL)의 200% 이상인 경우, 가족은 민간 건강관리/보험 이용에 관련된 자기부담금, 공동보험, 공제금을 청구받게 되며 해당하는 경우 Apple Health for Kids/Medicaid 청구를 받습니다.
- (c) 소득과 지출 정보로 확인한 조정 연간 소득이 가족 규모에 따라 연방빈곤선 (Federal

Poverty Level, FPL)의 200% 미만인 경우, 가족은 민간 건강관리/보험 이용에 관련된 자기부담금, 공동보험, 공제금을 부담하지 않으며, 해당하는 경우 Apple Health for Kids/Medicaid 청구를 받지 않습니다.

- (d) 자기부담금, 공동보험, 공제금을 청구받은 가정은 Part C 최종 납부자 기금 또는 다른 기관 기금을 이용하여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14.C.5. 지불 불능

- (a) 가정은 가족 자원 조정 담당관 (Family Resources Coordinator, FRC) 또는 다른 적절한 직원에게 언제든지 자기부담금, 공동보험, 공제금의 "지불 불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FRC는 가정이 소득과 지출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돕습니다.
- (b) "지불 불능"은 가족의 면제되지 않은 연간 허용 지출이 가족의 총 연간 조정 소득의 10%를 초과함을 나타내는 소득 및 지출 확인서 결과를 토대로 결정됩니다.
 - (1) "지불 불능"이 결정되면 Part C 최종 납부자 기금 또는 다른 기관 기금을 이용하여 자기부담금, 공동보험, 공제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2) 서비스를 보다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Part C는 동일한 제공자를 이용하거나 민간 건강관리/보험과 같은 비용을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 (c) 가정의 지불 불능 상태 결정은 일년에 한 번 이상 또는 가정의 요청에 따라 그보다 조기에 검토해야 합니다.
- (d) IFSP 이행 중 언제든지 가정의 "지불 불능" 상태가 변경되면 가정은 FRC에 가능한 빨리 알리고 새로운 지불 불능 상태 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보험이 변경된 경우 언제나 가정은 FRC와 해당 변경 비용을 분담해야 합니다.
- (e) 34 CFR §303.521(a)(4)(ii)에 따라 가정이 "지급 불능" 정의를 충족할 경우, 자녀의 IFSP에서 확인된 모든 Part C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또한 가정의 지급 불능으로 인해 Part C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거부되지 않습니다.
- (f) 가정의 지불 불능이 확인되지 않으면 가정은 민간 건강관리/보험 자기부담금, 공동보험, 공제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14.C.6. 수수료

- (a) Apple Health for Kids/Medicaid 또는 민간 건강관리/보험의 접근에 동의한 가정은 (최초 동의 및 서비스 증가 시 동의) 가족 비용 참여에 따른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b) Apple Health for Kids/Medicaid를 이용하고 지불 불능 상태에 해당하며 가족 비용 참여에 따른 Apple Health for Kids/Medicaid의 Part C 조기 개입 서비스 접근을 거절한 가정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c) 다음 중 한 가지 경우가 발생하면 가정은 소득 및 지출 정보가 월간 수수료 표 적용에 이용됩니다.
 - (1) Apple Health for Kids/Medicaid와 민간 건강관리/보험이 없는 가정은 가족 규모와 조정 연간 소득에 따라 월간 수수료 표가 적용됩니다.
 - (2) 가족 비용 참여에 따른 Part C 조기 개입 서비스에 민간 건강관리/보험의 접근을 거절하고 소득 및 지출 정보를 제공한 가정은 가족 규모와 조정 연간 소득에 따라 월간 수수료 표가 적용됩니다.

- (d) 소득 및 지출 정보 제공을 거부한 가정은 가족 규모에 따라 가장 높은 월간 수수료 표가 적용됩니다.

14.C.7. 미납

- (a) 소득 및 지출 확인서 정보를 토대로 가족 비용 참여에 따른 가족의 자기부담금, 공동보험, 공제금, 서비스 수수료 능력이 인정되었으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거절은 미납액이 90일간 청구 금액에 해당하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b) 가족과 서비스 제공자, FRC는 가정과 서비스 기관 사이에 납부 계획을 마련하지 않는 한 FRC 서비스, 평가, IFSP 개발 및 검토, 절차적 안전조치를 제외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을 알리는 사전 통지서를 받습니다.
- (c) 가정과 서비스 제공 기관이 납부 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동의하면, 가정과 FRC, 서비스 제공자는 가족 비용 참여에 따른 서비스가 재개될 수 있음을 알리는 통지를 받습니다.

14.C.8. 정의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의를 적용합니다.

- (a) “허용 지출”은 다음을 뜻합니다.
 - (1) 가정에서 제삼자에게 지불하는 아동 지원금/수당
 - (2) 부모가 일을 하거나 학교에 갔을 때 발생하며 가정이 지불하는 아동 관리 비용
 - (3) 보험료, 자기부담금, 공제금 등 가정에서 부담하는 비면제 의료, 처방약, 치과 치료 비용
- (b) “공동보험”은 건강관리에 대해 부모가 공유하는 비용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관리에서 서비스 비용의 80%를 지불하고 부모가 20%를 지불합니다.
- (c) “자기부담금”은 건강관리 보험의 결정에 따라 특정 서비스, 장비, 제공품에 대해 부모가 건강관리 제공자에게 지불할 금액을 뜻합니다. 대금 지불은 서비스 또는 물품 제공자에게 직접 제공됩니다.
- (d) “공제금”은 혜택을 받기 전에 부모가 부담한 의료/치과 지출 비용의 일부분을 뜻합니다. 자기부담금 및/또는 공동보험은 공제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e) “가족 비용 참여에 따른 조기 개입 서비스”는 IDEA의 조기 개입 부문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아동의 발달과 아동 발달 증진과 관련된 가족의 필요에 맞게 설계된 보조 기술 장치, 보조 기술, 청각학, 상담, 보건 서비스, 간호 서비스, 영양 서비스, 작업 치료, 물리 치료, 심리 서비스, 사회봉사 서비스, 언어 병리학 서비스를 뜻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부모와 협력하여 선택됩니다. 서비스는 워싱턴 주의 “자격” 정의에 부합하는 자에 의해 개별화 가족 복지 계획 (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 IFSP)을 준수하여 제공됩니다.
- (f) “조기 개입 서비스 계약자 (지역 선임 기관)”는 조기교육부(Department of Early Learning, DEL), 영유아 조기지원부(Early Support for Infants and Toddlers, ESIT)와 승인된 워싱턴주 보조금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기 개입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지역 지정 기관이나 조직을 뜻합니다.
- (g)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는 IDEA, Part C,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공공 또는 민간 서비스 제공자나 기관을 뜻합니다.

- (h) “가족 비용 참여”는 (1) 가족의 민간 건강관리/보험 및/또는 (2) Apple Health for Kids/Medicaid 접근을 허용하거나 (3) IDEA Part C 가족 비용 참여에 따른 조기 개입 서비스 수수료를 부담하여 가정에서 자녀 서비스를 위해 지불하는 기여금을 뜻합니다.
- (i) “가족 자원 조정 담당관 (FRC)”은 개별화 가족 복지 계획 (IFSP)에 따라 자격을 갖춘 아동과 그 가족이 조기 개입 서비스와 기타 자원을 이용하고 조기 개입 프로그램의 권리와 절차적 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개인을 뜻합니다.
- (j) “고 공제금/변동성 관리 의료보험”은 연간 공제금이 \$5,000 이상으로 조기 개입 청구를 위한 신뢰할 수 없는 보험으로 간주되는 보험을 뜻합니다.
- (k) “개별화 가족 복지 계획 (IFSP)”은 IDEA의 조기 개입 부문에 따른 자격이 있는 아동과 그 가정에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면 계획을 뜻합니다. 이 계획은:
 - (1) 가족과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공동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2) 아동에 대한 여러 분야의 평가를 토대로 합니다,
 - (3) 부모의 허가에 따라 아동 발달 증진에 관련된 가족 자원, 우선순위, 관심사안 설명을 포함합니다,
 - (4) 아동 고유의 요구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가족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기 개입 서비스 설명을 포함합니다.
- (l) “IFSP 조기 개입 서비스”는 영유아 IFSP에 설명된 조기 개입 서비스를 뜻합니다.
- (m) “부모”는 다음을 뜻합니다.
 - (1)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 또는 입양 부모
 - (2) 주 법률, 규정, 주 또는 지역 법인과 계약 의무에 따라 양부모가 금지되지 않는 경우 양부모
 - (3) 아동의 부모 역할 또는 아동의 조기 개입, 교육, 보건, 발달 관련 결정을 내릴 자격을 가진 보호자(아동이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에 해당되지 않음)
 - (4) 아동과 함께 생활하며 생물학적 부모나 입양 부모를 대리하는 개인(조부모, 양부모 기타 친척 포함) 또는 아동의 복지를 법적으로 책임지는 개인,
 - (5) 34 CFR §303.422 또는 법 639(a)(5)항에 따라 지정된 대리부모,
- (n) “공공 또는 민간 건강관리/보험”은 다음을 뜻합니다.
 - (1) “민간 보험” – 아동 및/또는 가족의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을 제삼자가 부담할 여기에는 고용 관련 보험과 개인 구입 보험, 의료 저축 계좌, 건강 저축 계좌가 포함됩니다.
 - (2) “TRICARE/TRIWEST” – 군인 및 그 가족을 위한 보건 혜택 프로그램
 - (3) “공공 보험” – 아동을 위해 건강 관리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는 공공 기금 프로그램 (주 및/또는 연방) 여기에는 Basic Health Plus, Medicaid, Medicaid Healthy Option, 아동 건강보험 프로그램 등 모든 Apple Health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 (o) “주 선임 기관 (SLA)”은 조기교육부(Department of Early Learning)를 뜻합니다.
- (p) “총 연간 소득”은 다음을 뜻합니다.

- (1) 다음과 같이 고용 및/또는 기타 소득원을 통해 얻는 연간 소득: 공공 지원 보조금, 실업 수당, 장애 소득, 자녀 양육비/이혼수당, 기타 다음 중 하나로 확인되는 소득:
 - (i) 최근 연방 소득세 신고서 (*양식 1040=22 행; 1040A=15; 행 1040EZ=4 행*);
 - (ii) 최근 W2 및/또는 1099 (*양식 W2= 1 행; 1099= 전체 행 1, 2&3*);
 - (iii) 최근 2회분 급여명세서, 또는
 - (iv) 서면으로 작성된 임금, 급여 명세서 (*회사/고용주 이름, 주소, 전화번호, 관리자/인사 담당자 서명이 포함되어야 함*)
- (2) 군인의 경우 봉급명세서에 제시된 다음의 총액을 포함합니다.
 - (i) 기본급(근로소득) 및
 - (ii) 수당(미경과 소득)
 - (iii) 수당이 지급되고 같은 급여 기간 중에 공제된 경우 사격 수당, 위험 수당, 무료 주택 또는 기본 주택 수당은 포함하지 마십시오.